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 법률 조문 정비〉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6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개별 법률안의 검토	8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7
(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4
(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49
(9)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18.
3. 회부연월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주요 법제도 사항에 대한 일원화된 규범을 마련하고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절성·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¹⁾

그러나 개별법에서 여전히 「행정기본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개정안은 개별법의 재제처분에 관한 유형, 상한 등이 「행정기본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히 하고,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이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정비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경우 「행정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거나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1) 법률 제17979호, 2021.3.23. 제정, 2023.3.24. 시행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정비대상 법률 및 주요 내용>

연번	정비대상 법률	주요 내용	관련 조문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관한 법률	제재처분 기준 정비	「행정기본법」 제22조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
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소하천정비법		
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정비	「행정기본법」 제31조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도로교통법	이의신청 규정 정비	「행정기본법」 제36조

개정안은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거나 이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특례임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소방청은 「행정기본법」의 규율 사항에 부합하도록 개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각 소관위원회별로 「공인회계사법」 등 총 114개의 법률안의 인·허가 의제,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거나 그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음.

<정비대상 법률 관련 「행정기본법」 조문>

<제재처분의 기준 관련 조문: 제22조>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정비 관련 조문: 제31조>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의신청 관련 조문: 제36조>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개별 법률안의 검토

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처분하는 운영정지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상한을 명시하고, 취소 또는 운영정지 처분의 절차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u> ----- ---.
1. 2. (생략) ④ · ⑤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u>기관의 운영정지</u>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 ----- 1 <u>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u>-----.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며, ②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또는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와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현황>

위반행위	현행법	시행령(제1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1차 위반: 지정취소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2호)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	·1차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위반: 운영정지 3개월 ·3차위반: 운영정지 6개월 ·4차위반: 지정취소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1호)	시정 또는 운영정지	·1차위반: 시정명령 ·2차위반: 운영정지 1개월 ·3차위반: 운영정지 3개월 ·4차위반: 운영정지 6개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1호)		

그런데 현행법은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절차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은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 처분과 함께 지정취소에 대해서도 처분 기준을 규정³⁾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안전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법률의 내용과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실제 운영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현행법은 시행령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기간의 상한 등에 대해 명시 없이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처분 대상이 되는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제재처분을 받게 될지도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1년 3월 23일에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기관의 운영정지 처분의 상한을 1년 이내로 명시하며, ‘안전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행법을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4)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제 운영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생략) <신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법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개발행위의 허가, 도로 점용,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리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관련 조항⁶⁾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⁷⁾, 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 4. 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6)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관련 조문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인·허가의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는 점을 개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법률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26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u>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에 따른다.</u>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법⁸⁾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장에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 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립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8. 10. 16., 2021. 11. 30.>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숙)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제10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획이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화재안전등급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⁹⁾를 명할 수 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록 하고 있음(제1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제26조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한편,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산정기준은 “1천만원 이하”와 같이 정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재산가액의 100분의 20”과 같이 의무이행과 관련된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으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해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5조).¹⁰⁾

구체적으로 「행정기본법」 제3장 행정작용(제14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는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 부과 금액, 계고·통지·징수 등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i)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안 제26조제1항)과 ii)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6조제4항(안 제26조제2항) 및 iii)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26조제7항(안 제26조제3항)의 내용은 계속 이 법에 규정하고,

iv)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현행법 제26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은 삭제하며,

10)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v)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제4항).

<이행강제금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제26조)¹¹⁾>

내 용	현 행	개정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제1항	현행과 같음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	제4항	안 제2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7항	안 제3항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현행 삭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 준용(안 제4항)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는 개정은 국민이 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11)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참 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의 조문 내용 비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기본법
현행	개정안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삭 제>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	<삭 제>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기본법
현행	개정안	
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31조 제4항		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개정안 제2항으로 이동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현행법 제4항과 동일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	<삭 제>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행정절차법 제31조 제6항	<삭 제>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기본법
현행	개정안	
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 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제3항으로 이동	<u>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u> ☑ 현행법 제7항과 동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 수에 관하여는 「행정기 본법」 제31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 행정기본법 」 준용 규정 신설	

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①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를 고려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 제목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개정하고,

② 현행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중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③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에 시·도경찰청장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④ 「도로교통법」 제94조제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② (생략)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현행	개정안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¹²⁾에 따른다.

- 12) 「도로교통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제목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특별히 정하려는 것인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제목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동법 제5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위 조항에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을 안내하는 내용인데 이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과 중복되는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 제94조제3항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보다 그 기간을 길게 정하고 있음.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60일로 설정한 것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판단을 위해서는 ①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부 등 감경조건을 갖

추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고, ②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일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1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
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사건 중 접수·처리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는 1,800건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접수·처리 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는 11,096건으로 97.3%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비율)
계	1,738	1,788	2,422	2,505	2,953	11,406 (100%)
14일 이하	247	266	391	400	496	1,800 (15.8%)
15 ~ 30일	463	564	790	777	935	3,529 (30.9%)
31 ~ 45일	539	593	701	673	847	3,353 (29.4%)
46 ~ 60일	407	310	504	599	594	2,414 (21.2%)
60일 초과	82	55	36	56	81	310 (2.71%)

※ 자료: 경찰청

개정안 제94조제5항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94조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의 관계에서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규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므로 동조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u>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u>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삭 제></u> <u>제1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u> <u>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u> <u>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u>

현행	개정안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준공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법은 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인·허가등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③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¹³⁾.

- 1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또한, 소규모 위험시설의 준공 또는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법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¹⁴⁾.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주된 인허가등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인허가등 의제의 효과 및 사후관리 등 인허가 등 의제와 관련하여 규정¹⁵⁾하고 있음.

-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5)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개정안은 현행법상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서류 제출 의무 등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등의 의제가 아닌 준공검사·준공검사 등의 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인·허가등의 의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하나의 조문에 다른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정비함으로써 각 조문별 규율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16)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이 준용됨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

(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한 사항 및 법률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소하천등 정비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이 조 및 제10조의3 에서 ----- -----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 ----- ----- -----

현행	개정안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6. (생략)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1. ~ 16.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삭제>

현행법은 소하천의 관리청¹⁷⁾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

17)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4. (생략)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 ⑤ (생략)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 아닌 자가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으면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리청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를 허가하려는 경우 인·허가등 의제 사항에 대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¹⁸⁾

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 4. 15.>
-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서류 제출 의무 등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¹⁹⁾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 관계 이해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또한,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본법」²⁰⁾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개정안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이 「행정기본법」이 준용됨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법률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관광유람선업을 하려는 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가 수리되면 관할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가 수리되면 관할관청이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u>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② <u>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른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²¹⁾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 신청 또는 신고 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관청은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 시 일반관광유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의제 규정²²⁾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은 주된 인허가등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및 협의 요청 시 20일 이내 의견제출, 인허가등 의제의 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²³⁾하고 있음.

- 2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①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② 관할관청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③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 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먼저,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 및 「행정기본법」의 인허가등 의제 규정 준용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됨.

또한, 주된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23)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 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은 「행정기본법」²⁴⁾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이 준용됨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법률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이 협의 요청 시 의견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한 것과 달리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 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화하여 사업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의 소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²⁵⁾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생각됨.

24)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2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 30일 이내 의견제출 규정을 삭제하며,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

[illegible]

현행	개정안
<u>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생략)</u> <u><신설></u>	<u>③ (현행 제4항과 같음)</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의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현행법은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함)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²⁶⁾.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지정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6.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²⁷⁾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은 주된 인허가등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및 협의 요청 시 20일 이내 의견 제출, 인허가등 의제의 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²⁸⁾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② 협의 요청 시 30일 이내의 의견 제출 규정을 삭제하며, ③ 그 밖에

2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8)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또한, 주된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29)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이 준용됨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법률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현행법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기본법」이 의견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의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29)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을 단축³⁰⁾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권익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됨.

30) 의견 제출 기간 단축(30일 → 20일)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음.

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³¹⁾의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의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그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생략) <u><신 설></u>	제2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골재채취의 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³²⁾

3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3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개정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이와 관련된 「행정기본법」 조항의 준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³³⁾, 현행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조문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인·허가의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는 점을 개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법률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 6788-5351, 5349, 5345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3. (생략)

3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